

자동차관리법

[시행 2014.8.7.]
[법률 제 11998 호, 2013.8.6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) 044-201-3838, 3850

제 7 장 자동차관리사업 <개정 2009.2.6.>

제 60 조(자동차경매장의 개설·운영 등)

-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, 합리적인 수급 조절,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·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(이하 "경매장"이라 한다)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3.23.>
-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③ 경매장을 개설·운영하는 자(이하 "개설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·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.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
-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·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
-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.]

제62조(경매 거래의 참가)

경매 참가인은 경락(競落)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[전문개정 2009.2.6.]

제63조(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)

- ①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경락받은 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인수

- 를 독촉하여야 한다.
- ②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경락받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재경매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른 경락인이 부담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.]
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(일부)

[시행 2014.8.7.] [대통령령 제25532호, 2014.8.6., 타법개정]
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) 044-201-3840

제14조(전산자료의 이용)

-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(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,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.

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
자료의 범위
자료의 제공방식·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)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신청내용의 타당성·적합성 및 공익성
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
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)

-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-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-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제2항 각호의 사항
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
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)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[시행 2014.10.31.] [국토교통부령 제134호, 2014.10.31., 일부 개정]
국토교통부(자동차정책과) 044-201-3838, 385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개정 2005.9.16.> (중략)

제3절 자동차경매장

제124조(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)

-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(이하 "경매장"이라 한다)을 개설·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. <개정 2007.6.7., 2010.2.18.>
- ② 경매장을 개설·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0.2.18.>
- ③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(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<신설 2010.2.18.>

제126조(경매장개설승인)

- ① 경매장을 개설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·운영승인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2.31., 2001.4.19., 2003.1.2., 2004.11.29., 2005.9.16., 2006.8.7., 2010.2.18., 2011.4.11.>
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

- ② 경매장(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. 다만,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.

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(생략)
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2.31., 2007.6.7.>
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
- 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·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·운영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2.31., 2010.2.18.>
- ⑤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·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시설 및 정비요원"은 "경매장시설 및 인력"으로 본다. <개정 1999.12.31., 2007.6.7., 2011.12.15.>

제127조 (변경 승인등)

- ① 경매장의 개설·운영승인을 얻은 자(이하 "경매장개설자"라 한다)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9.12.31., 2007.6.7., 2010.2.18.>

상호 또는 명칭
대표자 또는 임원
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
(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·개축을 제외한다)
성능점검·검사책임자
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

-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·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경매장개설·운영승인서
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
- ② 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128조(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·검사등)

- ① 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·검사하여야 한다.
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
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자인지의 여부
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·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
- ② 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·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 점검·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·검사일부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·사진·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·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.
- ③ 경매장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·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·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7.>

제129조(경매보증금등)

- ① 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에 따른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2.18.>
- ②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출품료 :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·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

경매수수료 :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.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1999.12.31.]

제130조(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)

- ① 제121조제6항·제122조(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)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·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1999.12.31.>